

# 도보

제2856호 2015년 1월 9일(금)

선 람	기관의 장

## 규 칙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695호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정원규칙	3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696호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인사규칙	17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697호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52

## 훈 령

충청북도 교육훈령 제363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규정 폐지규정	61
-----------------	--	----

## 고 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3
------------------	-----------------------	----

## 공 고

충청북도 공고 제2014-120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사항 공고	66
충청북도 공고 제2014-1211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신규 등록 공고	67
충청북도 공고 제2015-2호	울산도로(대수동) 선형개량공사 보상계획 공고	68
충청북도 공고 제2015-9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72
충청북도 공고 제2015-13호	2015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74
충청북도 공고 제2015-16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78
충청북도 공고 제2015-17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79
충청북도 공고 제2015-18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80

☞ 뒤쪽 이어서



## 시 군 행정

### △ 고 시

제천시 고시 제2015-7호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5
제천시 고시 제2015-8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소로3-459]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6
증평군 고시 제2015-2호 증평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기본계획 고시	87
진천군 고시 제2015-5호 진천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89
괴산군 고시 제2015-3호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101

### △ 공 고

충주시 공고 제2015-15호 충주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진달래동산)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09
제천시 공고 제2015-1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12
영동군 공고 제2015-19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16
증평군 공고 제2015-14호 공인 등록 공고	119
음성군 공고 제2015-8호 음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의 공고	120
음성군 공고 제2015-9호 공인 신조 등록 공고	121
단양군 공고 제2015-2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22

## 기 타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5-4호 2014년도 제2-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124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5-5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6

**규 칙**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정원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695호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정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원관리**

제3조(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교육감 및 교육장은 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근로자의 정원책정에 대하여는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인력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거나 채용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관리의 특례)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2. 공무원 및 근로자의 휴직, 휴가(출산휴가, 병가 등) 사용에 따른 대체근로자

제5조(정원 및 배치기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직종별 정원 및 배치기준은 별표 1,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정원 책정·변경·감축 요구)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해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정원의 변경·감축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 책정 승인)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정원책정의 승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의 목적, 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규사업 등 필요한 경우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사업의 변동에 따른 정원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본청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교육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정원 책정 및 승인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에 직종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종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1]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제5조 관련)

## 1. 교육행정기관

번호	직종명	정원			배치기준	사업부서
		무기직	기간제	소계		
1	행복나눔실무원	24	0	24	- 본청 2명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주학생회관 각 1명 - 교육지원청 각 1명 (단, 보은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제외) -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각 1명 (단, 교직원복지회관, 북부영어체험센터, 남부 영어체험센터, 제천학생회관, 진천도서관 제외)	기획관
2	학습상담사	0	6	6	- 본청 1명 - 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 각 1명 (청주, 충주, 제천, 괴산증평, 옥천)	초등교육과
3	특수교육치료사	13	0	1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각 1명 (단, 청주교육지원청 3명 추가)	유아특수교육과
4	변호사	0	1	1	- 본청 1명	진로인성교육과
5	사회복지사	14	0	14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Wee스쿨 1명 - 교육지원청 Wee센터 각 1명 (단, 청주교육지원청 1명 추가) - 청주교육지원청 가정형 Wee센터 2명	진로인성교육과
6	생활지도사	1	0	1	- 청주교육지원청 가정형 Wee센터 1명	진로인성교육과
7	원어민보조교사	0	28	28	- 본청 1명 -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1명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8명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10명 - 북부영어체험센터 4명 - 남부영어체험센터 4명	진로인성교육과
8	임상심리사	11	0	11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Wee스쿨 1명 - 교육지원청 Wee센터 각 1명	진로인성교육과
9	전문상담사	49	0	49	- 본청 6명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Wee스쿨 2명 - 교육지원청 Wee센터 시지역 5명, 군지역 3명 (단, 청주교육지원청 3명 추가) - 청주교육지원청 가정형 Wee센터 2명	진로인성교육과
10	학부모컨설턴트	3	0	3	- 본청 1명 - 청주교육지원청 1명 - 충주교육지원청 1명	진로인성교육과
11	한국어강사	1	0	1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1명	진로인성교육과

번호	직종명	정원			배치기준	사업부서
		무기직	기간제	소계		
12	사서실무원	0	15	15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한시운영)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제천학생회관 각 3명 · 영동도서관, 증평도서관, 단양도서관 각 2명	과학직업교육과
		2	0	2	- 충주학생회관 2명	충주학생회관
13	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관리자	0	3	3	- 본청 1명 - 청주교육지원청 2명	체육보전급식과
14	체육지도자(코치)	0	2	2	- 본청 1명 - 충주교육지원청 1명	체육보전급식과
		0	3	3	- 청주교육지원청 3명	청주교육지원청
15	프로젝트조정자	3	0	3	- 청주교육지원청 1명 - 충주교육지원청 1명 - 제천교육지원청 1명	방과후학교지원단
16	보육교사	3	0	3	- 본청 3명	총무과
17	시설관리자	2	0	2	- 본청 2명	총무과
		2	0	2	- 청주교육지원청 2명	청주교육지원청
		1	0	1	- 옥천교육지원청 1명	옥천교육지원청
		0	2	2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18	조리원	1	0	1	- 본청 1명	총무과
		4	0	4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본원 3명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1명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2	0	2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Wee스쿨 2명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2	0	2	-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2명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1	0	1	-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1명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1	0	1	- 청주교육지원청 1명	청주교육지원청
		3	0	3	- 북부영어체험센터 3명	충주교육지원청
		2	0	2	- 남부영어체험센터 2명	옥천교육지원청
19	행정실무사	1	0	1	- 본청 1명	공보관
		1	0	1	- 본청 1명	총무과
		7	0	7	- 본청 2명 - 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 각 1명 (청주, 충주, 제천, 괴산증평, 옥천)	초등교육과
		4	0	4	- 본청 1명 - 청주교육지원청 1명 - 충주교육지원청 1명 - 옥천교육지원청 1명	진로인성교육과

번호	직종명	정원			배치기준	사업부서
		무기직	기간제	소계		
		11	0	11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각 1명 (단, 청주교육지원청 1명 추가)	유아특수교육과
		2	1	3	- 본청 1명(기간제) - 청주교육지원청 1명 - 진천교육지원청 1명	방과후학교지원단
		2	0	2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2명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2	0	2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2명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1	0	1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Wee스쿨 1명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3	0	3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3명	충청북도교육정보원
		1	0	1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1명	충청북도교육정보원
		3	0	3	- 청주교육지원청 3명	청주교육지원청
		1	0	1	- 충주교육지원청 1명	충주교육지원청
		1	0	1	- 제천교육지원청 1명	제천교육지원청
		0	1	1	- 음성교육지원청 1명	음성교육지원청
20	안내원	3	0	3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3명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5	2	7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7명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21	평생교육사	2	0	2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2명	충청북도중앙도서관
22	난방원	2	0	2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2명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23	무대예술전문인	3	0	3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3명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24	안전관리자	7	0	7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7명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25	간호조무사	1	0	1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1명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1	0	1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1명	충청북도교육정보원
26	청소원	4	0	4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4명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3	0	3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본원 2명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1명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3	0	3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3명	충청북도교육정보원
27	수련지도사	2	0	2	-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2명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3	0	3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3명	충청북도교육정보원
		1	0	1	-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1명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번호	직종명	정원			배치기준	사업부서
		무기직	기간제	소계		
28	사감	0	2	2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2명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0	1	1	- 북부영어체험센터 1명	북부영어체험센터
		0	2	2	- 남부영어체험센터 2명	남부영어체험센터
29	영어강사	1	0	1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1명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30	청소년지도사	4	0	4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Wee스쿨 4명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31	교과전문강사	1	0	1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Wee스쿨 1명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32	영상음향제작운영자	1	0	1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1명	충청북도교육정보원
33	유아교육지원실무원	6	0	6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6명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34	영양사	2	0	2	-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1명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1명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35	조리사	1	0	1	-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1명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합 계		241	69	310		

2. 공립학교

번호	직종명	정원			배치 기준	사업부서
		무기직	기간제	소계		
1	행복나눔실무원	56	0	56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희망 교당 1명	기획관
2	행정실무사	140	0	140	- 학생수 600명 이상인 학교 1명 (단, 기숙형중학교의 경우 학생수에 관계없이 1명)	기획관
3	사서/사서실무원	120	0	120	- 학교도서관 규모 67.5㎡ 이상인 학교로 사서교사 (공무원) 미배치 학교 중 · 동지역 소재 초·중학교는 학생수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 읍면지역 소재 초·중학교는 학생수 255명 이상인 경우 1명 (단, 고등학교, 특수학교 미배치)	초등교육과
4	전일제강사	32	0	32	- 2개 학년 학생수 6명 이하인 복식학급 교당 1명 (단, 2개 학년 중 1개 학년 학생수 2명 이하)	초등교육과
5	교무실무사	701	0	701	- 학교당 1명(병설유치원 및 분교장 제외) - 5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1명(특수학급 제외) - 단설유·초 학급수 10학급 이상인 경우 1명 추가 - 중·고 학급수 7학급 이상인 경우 1명 추가 - 학교과학관, 발명교육,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 학교 각 1명 추가	유아특수교육과
6	보육교사	3	0	3	- 탁아방 원아수 7명당 1명	유아특수교육과

번호	직종명	정원			배치 기준	사업부서																																				
		무기직	기간제	소계																																						
7	유치원돌봄교실 운영실무원	0	46	46	- 학급당 돌봄교실(아침, 저녁돌봄 포함) 희망 원아 수가 8명 이상인 경우 급당 1명	유아특수교육과																																				
8	유치원방과후 교육사	149	0	149	- 학급당 방과후과정 희망 원아수가 8명 이상인 경우 급당 1명	유아특수교육과																																				
9	코디네이터	0	1	1	- 특수학급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학생 50명당 1명	유아특수교육과																																				
10	특수교육실무원	257	0	257	- 특수학급당 1명을 배치하되 기타보조원이 있는 경우 미배치(전공과 및 영유아 제외) (단, 배치학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유아특수교육과																																				
11	특수교육치료사	4	0	4	- 특수학교 교당 2명	유아특수교육과																																				
12	특수종일반방과후 과정운영실무원	22	0	22	- 특수학급 종일반 급당 1명	유아특수교육과																																				
13	원어민보조교사	0	142	142	- 학생수 1,200명당 1명	진로인성교육과																																				
14	전문상담사	117	0	117	- 학생수 101명 이상인 초·중·고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1명	진로인성교육과																																				
15	체험센터전문요원	0	2	2	- 요리, 미용체험센터(증평정보고등학교) 운영 2명	진로인성교육과																																				
16	한국어강사	4	0	4	-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 학생 20명당 1명	진로인성교육과																																				
17	급식운반운전원	0	60	60	- 학생수 200명 미만의 직영차량이 없는 운반 급식교 1명	체육보건급식과																																				
18	보건업무보조교사	31	0	31	- 중·고등학교 225명 이상 학교 중 보건교사 미배치교 1명	체육보건급식과																																				
19	스포츠강사	0	541	541	- 초: 3-6학년 체육시수(주당 21시수) 운영학교 중 체육전담교사 미배치교 1명 - 중: 학교스포츠클럽 종목별 학생 10명당 1명	체육보건급식과																																				
20	영양사	124	0	124	-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급식조리학교 1명 (단, 급식조리학교 영양교사(공무원) 배치교와 공동관리학교 제외)	체육보건급식과																																				
21	조리사	157	0	157	-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급식조리학교 1명 (단, 급식조리학교 조리사(공무원) 배치교 제외)	체육보건급식과																																				
22	조리원	1,683	0	1,683	- 급식조리학교 조리원(공무원) 미 배치교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공동조리교 포함) □ 조리원 배치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급식인원</th> <th>조리원</th> <th>급식인원</th> <th>조리원</th> </tr> </thead> <tbody> <tr> <td>~149</td> <td>1명</td> <td>1,200~1,349</td> <td>9명</td> </tr> <tr> <td>150~299</td> <td>2명</td> <td>1,350~1,499</td> <td>10명</td> </tr> <tr> <td>300~449</td> <td>3명</td> <td>1,500~1,649</td> <td>11명</td> </tr> <tr> <td>450~599</td> <td>4명</td> <td>1,650~1,799</td> <td>12명</td> </tr> <tr> <td>600~749</td> <td>5명</td> <td>1,800~1,949</td> <td>13명</td> </tr> <tr> <td>750~899</td> <td>6명</td> <td>1,950~2,099</td> <td>14명</td> </tr> <tr> <td>900~1,049</td> <td>7명</td> <td>2,100~2,249</td> <td>15명</td> </tr> <tr> <td>1,050~1,199</td> <td>8명</td> <td>2,250~</td> <td>16명</td> </tr> </tbody> </table>	급식인원	조리원	급식인원	조리원	~149	1명	1,200~1,349	9명	150~299	2명	1,350~1,499	10명	300~449	3명	1,500~1,649	11명	450~599	4명	1,650~1,799	12명	600~749	5명	1,800~1,949	13명	750~899	6명	1,950~2,099	14명	900~1,049	7명	2,100~2,249	15명	1,050~1,199	8명	2,250~	16명	체육보건급식과
급식인원	조리원	급식인원	조리원																																							
~149	1명	1,200~1,349	9명																																							
150~299	2명	1,350~1,499	10명																																							
300~449	3명	1,500~1,649	11명																																							
450~599	4명	1,650~1,799	12명																																							
600~749	5명	1,800~1,949	13명																																							
750~899	6명	1,950~2,099	14명																																							
900~1,049	7명	2,100~2,249	15명																																							
1,050~1,199	8명	2,250~	16명																																							
					- 덤웨이터 설치학교(조리실→식당) 1명 추가 - 중·고등학교 2석 학교는 조건표 기준인원수의 20% 추가																																					

번호	직종명	정원			배치 기준	사업부서						
		무기직	기간제	소계								
					- 중·고등학교 3식 학교는 조건표 기준인원수의 25% 추가 - 조식 인원에 따른 조리원 추가(3식 운영학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조식인원</td> <td>조리원수</td> </tr> <tr> <td>150명-299명</td> <td>1명</td> </tr> <tr> <td>300명 이상</td> <td>2명</td> </tr> </table> - 급식비조리학교 운반급식 급식인원 100명 이하인 학교 1명, 101명-300명 이하인 학교 2명	조식인원	조리원수	150명-299명	1명	300명 이상	2명	
조식인원	조리원수											
150명-299명	1명											
300명 이상	2명											
23	체육지도자(코치)	0	236	236	- 운동부 육성학교 종목당 1명	체육보건급식과						
24	교육복지사	31	0	31	-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학생수가 100명 이상이면서 전체 학생수 대비 대상학생 비율이 10% 이상인 학교 1명	방과후학교지원단						
25	초등돌봄전담사	335	32	367	- 돌봄교실(오후, 저녁) 운영 학급당 1명	방과후학교지원단						
26	승하차실무원	10	4	14	- 공립유(단시간)·특수학교 중 직영 통학차량 1대당 1명	행정과						
		0	106	106	- 초등학교 중 직영 통학차량 1대당 1명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27	생활지도사	0	1	1	- 기숙형중학교의 기숙사에 입사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5명 미만인 경우 1명, 5명 이상인 경우 2명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28	사감	4	0	4	- 기숙형중학교 학생수 200명 미만인 경우 1명, 200명 이상인 경우 2명 (단, 남·여 공학시 1명 추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합 계		3,980	1,171	5,151								

[별표 1의2]

각급 학교 자체 채용된 직종별 현황(제5조 관련)

번호	직종명	정원			사업부서	비고
		무기직	기간제	소계		
1	당직전담원	6	0	6	엄정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생극초등학교, 어상천초등학교, 대제중학교, 무극중학교	
2	매점관리원	1	0	1	제천고등학교	
3	사감	39	0	39	충북고등학교, 청주여자고등학교,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상당고등학교, 주성고등학교, 흥덕고등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 산남고등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오창고등학교, 오송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제천제일고등학교, 단양고등학교, 청주의국어고등학교(2명), 서원고등학교(2명), 양청고등학교(2명), 제천고등학교(2명),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2명), 충북에너지고등학교(2명), 충주여자고등학교(2명), 한국바이오마스터고등학교(2명), 옥천고등학교(2명), 진천고등학교(2명), 제천여자고등학교(3명)	
4	안내원	0	1	1	주성초등학교	
5	영어강사	0	4	4	제천중앙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 민송초등학교	
6	원어민보조교사	0	8	8	청주의국어고등학교(영어 2명, 제2외국어 6명)	
7	조무원	2	0	2	서현중학교, 솔밭중학교	
8	청소원	9	0	9	오창중학교, 무극중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 오송고등학교, 제천상업고등학교, 제천여자고등학교(2명), 대소금왕고등학교(2명)	
9	청원경찰	1	0	1	수곡초등학교	
합 계		58	13	71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 정원(신규채용, 변경, 감축) 승인서(제7조 관련)

○ 승인사항

사업부서	직종	정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정원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인)

000 귀하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정원규칙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및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별표 1, 별표 1의2)
- 다. 정원 책정·변경·감축 요구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인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696호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인사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사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본청위원회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교육지원청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근로자와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휴·복직, 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2.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 단시간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법령 등에 따라 확정·결정된 경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교육지원청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1명,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근로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노무사, 노무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그 설치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친족관계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사무직원)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제10조(채용절차)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풀 인력 활용,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전형서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3조(채용구비서류) 제10조의 채용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신원진술서 1부
6.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7. 그 밖에 공고 시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

제14조(장애인 채용)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전형서류는 제11조에 따르며, 장애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근로계약)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수습기간) 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1. 인력풀 등록자를 채용할 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4.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5.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③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한다.

제17조(신분증)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퇴직 또는 해고된 근로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의 작성) 교육감 및 교육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채용·포상·징계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그 사항을 입력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9조(무기계약직 전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체결한다.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8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장 전보

제21조(전보의 일반원칙)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근로자가 동일기관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교육지원청 간 전보를 한다.

③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 2. 특수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인이 희망하거나 정원운영상 필요한 근로자는 전보할 수 있다.

제22조(전보의 시기) ① 매년 3월, 9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전보의 내신) ① 근로자가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와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근로자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근로자는 교육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이 아닌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의 전보내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보의 특례)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전보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이 아닌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근로자
2. 근무성적평정 평가 등급이 불량(40점 미만)한 근로자

## 제5장 근무성적평정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단위별로 별표 1에서 정한 근무성적평정자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실시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별표 2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별표 3 근무성적평정 평가기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한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평정 결과의 공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 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에 따라 평정한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대상은 종합평가결과로 한정한다.

### 제6장 신분보장

제27조(휴직) 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여성 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
2.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요양 기간
4.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④ 제1항과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1년,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90일로 한다.

제28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교육감 및 교육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30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종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되,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32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2.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4.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 무단 결직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2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3회 연속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제33조(징계의결 요구)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3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른다.

제34조(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양정의 기준) 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

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제37조(징계처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재심 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재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 청구의 취지
2. 재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징계양정에 따라 고려된 정황 또는 조정 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② 재심을 위한 관할 위원회는 본청위원회가 된다. 다만, 본청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심을 할 경우에는 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재심) ① 재심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 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0조(재심 결정) 재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41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과 근로자가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42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근로자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경고·주의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근로자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다.

제44조(징계처리대장) 각급 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배상 책임) 근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각급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 제8장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46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47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

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퇴직일자
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제48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9조(계약해지의 예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교육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 임면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한다.

**[별표 1]**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제25조 관련)**

평정자	확인자	비고
소속 부서의 장	소속 기관의 장	

## [별표 2]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제25조 관련)

감 점 항 목		점수
징계처분 등	정직	3점
	감봉	2점
	견책	1점
	경고(1회당)	0.2점
	주의(1회당)	0.1점
복 무	무단결근(1일당)	0.3점
	지각(1회당)	0.1점
불 친 질	불친절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되어 불친절로 확인된 근로자	0.3점

**[별표 3]**

**근무성적평정 평가기준(제25조 관련)**

평가 등급	평가가능 점수
탁월	85점 이상 100점 이하
우수	70점 이상 85점 미만
보통	55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	40점 이상 55점 미만
불량	40점 미만

## [별표 4]

징계양정기준(제36조 관련)

구 분	양 정 기 준
해고	가.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직	가.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봉	가.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견책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제15조 관련)**

○○○(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신규임용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업무 내용: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휴게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방학기간 등 비근무기간 제외) 다만 토요일(유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 및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 보수는 공무원 보수지급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_\_\_\_\_ )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와 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_\_\_\_\_ (전화: \_\_\_\_\_ )  
 기관명: \_\_\_\_\_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_\_\_\_\_ (전화: \_\_\_\_\_ )  
 생년월일: \_\_\_\_\_  
 성 명: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제19조 관련)**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 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 능력	업무 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태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 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가점				
합 계							
인 사 위 원							(서 명)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제20조 관련)

계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호	-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 종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제20조 관련)

제 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종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년 월 일		최종직종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행청	년월일	종 류	시행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전보내신서(제23조 관련)

인적 사항	소 속	직 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최초임용일	현 기관(부서) 임용일		현 시·군 전입일	
경력 사항	구 분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근무연수	비고
	현근무지		~	년 월	
	전근무지		~	년 월	
전보희망 사항	구 분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비고
	희망 시·군 (기관)	( )	( )	( )	
생활근거지 (주소)					
사유 및 특기사항					
소속기관 (부서)장 의 견					
내신자 및 소속기관 (부서)장	위와 같이 전보 내신합니다.				
			년 월 일		
	전보내신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부서)명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전보 유예 신청서(제24조 관련)

인적사항	소속	직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년 월 일 (만 세)
	최초 임용일			현 사군 전입일	
	현 직급 임용일			현 기관(부서)임용일	
담당 업무					
경력사항	구 분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연수	담당업무
	현근무지		-	년 월	
	전근무지		-	년 월	
	전전근무지		-	년 월	
소지 자격증					
유예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붙임				
유예 신청자	직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기관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제25조 관련)

(앞면)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	현보직일

○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근무실적 평정(60점)

단 위 업무명	주요 업무 실적	업무 비율 ①	단위업무 평정			
			업무량 (20점)②	완성도 (20점)③	적시성 (20점)④	소 계
총 점						

- ※ 업무비율은 단위업무명의 비중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작성
- ※ 단위업무 평정은 탁월(20)·우수(16)·보통(12)·미흡(8)·불량(4)으로 구분하여 평가
- ※ 소계 점수(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①×(②+③+④)

(뒷면)

2. 직무수행능력 평정(40점)

평정요소	배점	정 의	평정점수
업무이해도	10	소관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0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0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처리하며, 지각·결근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객지향성	10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불량(2)으로 구분·평가

3. 직무수행태도(감점 해당사항)

징계처분 등:	점	복무:	점	불친절:	점	감점 합계:	점
---------	---	-----	---	------	---	--------	---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정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	---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제33조 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종	
		한자		생년월일		근무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p>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인사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징계의결요구권자) (인)</p> <p>00인사위원회위원장</p>							

[별지 제10호서식]

**출석통지서(제35조 관련)**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인사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인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절 취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00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제37조 관련)

소속 및 배치장소	직 종	성 명
주 문	○○○○에 처한다.	
사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장 (인)</p> <p>000 귀하</p>		



## [별지 제13호서식]

근로자 입면 보고(제50조 관련)

학교명	성명	직종명	구분 (채용·전보· 해지·퇴직 등)	채용 등 년월일	담당업무	사 유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인사규칙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9조)
- 나.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6조)
- 다. 전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4조)
- 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마. 휴·복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부터 제29조)
- 바.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제44조)
- 사. 정년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697호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복무

제3조(복무 의무) 근로자는 신의와 성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복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
2. 근로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5. 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근무상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금지 및 허가)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종료 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출장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결근) 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로시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각·조퇴·외출 시간의 합이 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장 근로조건

#### 제1절 근로시간

제9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휴계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근무일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각급 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절 휴일·휴가

제10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며,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3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1조(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12조(경조사 휴가) ①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제13조(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4조(공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한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6. 교육청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제15조(병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업무 외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기간 중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제3절 모성보호

제16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제4장 보수

제1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전보·휴직·퇴직 등의 경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8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공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액

제21조(퇴직급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 제5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22조(교육훈련)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성희롱의 예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안전보건

제24조(안전·보건)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진단) ①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②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 제7장 재해보상

제26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나. 휴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다. 병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라.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훈 령**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훈령 제363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규정 폐지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규정 폐지규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원 책정 절차와 정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칙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규정」을 폐지함

나. 폐지 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각급 기관의 근로자 배치기준 및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정원 규칙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고 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km)
결정 변경	일반 국도	19	남해 ~ 홍천	영동군 영동읍	-	설계리 628-15	설계리 627-16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의 확장 및 개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 등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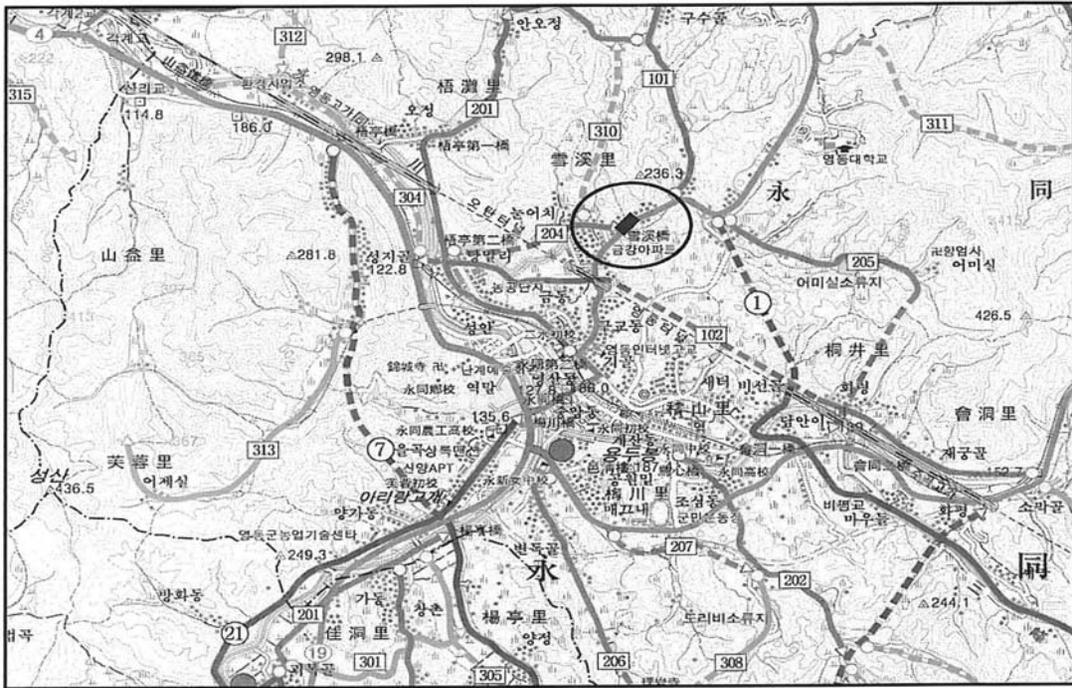
-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나. 열람장소 : 충청북도(도로과), 영동군(도시건축과)
- 다.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조서 : 따로 붙임

4.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같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항상 열람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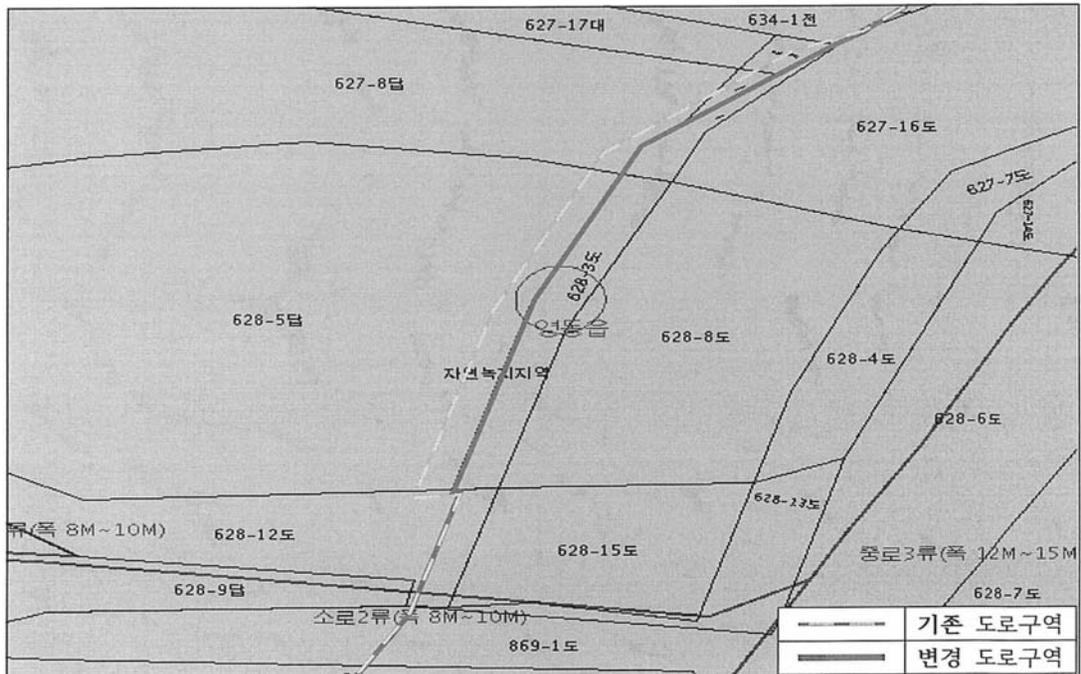
## □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자		비고
	읍	리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영동	설계	628	5	답	56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48번길 7-1	강구중	-	-	
2	영동	설계	627	8	답	402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77	박원자	-	-	
3	영동	설계	627	19	답	3	서울 종로구 체부동 93-2	유성하	-	-	
4	영동	설계	627	20	대	4	영동읍 설계리 671-1	김금희	-	-	

□ 위치도



□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면



<b>공 고</b>
------------

충청북도 공고 제2014-120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5년 1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 연월일	주 된 사 업	주 관 과
						등록구분
제2000-1-충 청북도-67호	한국부인회청주 시지회	충북 청주시 상 당구 문의면 미 천4길 5-10	김동점	00/0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li> <li>○ 지역사회 봉사활동</li> <li>○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교양사업</li> </ul>	여성정책관  변경등록 (단체명칭, 소재지)

충청북도 공고 제2014-1211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신규 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등 록 업 체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업종
상 호	영업소소재지				
(주)미래 이앤지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세종테크 노벨리 802,803호)	함경태	제 청주서부 2014-30호	2014.12.31.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 충청북도 공고 제2015-2호

## 울산도로(대수동) 선형개량공사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울산도로(대수동) 선형개량공사에 대한 보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울산도로(대수동) 선형개량공사
-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 사업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10월

## 2. 대상 토지 및 물건 위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구 간		연 장	비 고
		시 점	종 점		
지방도 927호선	군위~단양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 산74-39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495-8	0.37km (2차로)	

## 3. 토지 및 물건조서의 열람 안내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220-6071), 단양군 안전건설과(420-2864)  
단양군 대강면사무소(420-3781)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http://www.cb21.net)) →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5일간

## 4. 보상시기 : 2015년 1월 이후

5.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  
재결(협의불성립) → 공탁6.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7. 기 타 : 사업시기 및 보상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지 조서 집계표

(필지/면적(㎡))

지목 \ 구분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 고
임	2 1,136	2 1,136		
전	1 166		1 166	
계	3 1,302	2 1,136	1 166	

토지세 목록서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평면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	면	리					성 명	주 소	기타권리	성 명	주 소
1	단양	대강	울산	산74-39	임	11,147	762	국토해양부				
2	단양	대강	울산	산74-40	임	1,444,608	374	신림청				
3	단양	대강	울산	493	진	2,744	166	장성구외2	충북 단양군 대강면 윤신리287			
총 계						1,458,499	1,302					

토지세세목조서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칭물명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시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단양	대강	울산	493	가각	콘크리트벽돌(4.5×4.5)	㎡	20	장성구외2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287		권리관계
					철골파이프	B=2.0m	㎡	400				
					조경석		㎡	215				
					오미자	1년생	㎡	400				
					소나무	H=4.0m	주	2				
2	단양	대강	울산	신74-46	폐가옥	벽돌 슬레이트지붕	㎡	94.5	충청북도			
					담장	콘크리트벽돌(H=1.8m)	m	18				
					관상수	H=4.0m, 5년생	주	3				

## 충청북도 공고 제2015-9호

##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

1. 도로의 종류 : 지방도
2. 노 선 명 : 534호선(덕산~울산선)
3. 사용개시(전용) 구간

구 분	시 점	중요경과지	종 점	연장(km)
사용개시 구 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218-4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35-4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산54	1.44
전용구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44

4. 개시일자 : 2015. 1. 9.

## 5. 비 고

- 관계 도면은 충청북도 도로과(전화 : 043-220-4235)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붙임 : 5만분의 1 지형도





### 6. 지원조건

- 용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용자금리 : 금융기관금리에서 이차보전(2%)를 제외한 금리

〈금융기관금리〉

- 신용보증서(100%) : CD금리+2.0% 이내의 가산금리
- 신용보증서(100% 이외) : CD금리+3.0% 이내의 가산금리
- 담보물권, 개인신용 : 금융기관 변동금리

※ 단, CD금리는 금융기관별 기준금리에 따름

- 용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 ※ 추천서 유효기간 : 용자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 7. 신청서류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용자 신청서 및 관련 부속서류

〈용자신청서 부속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해당자), 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해당자), ※ 착한가격업소 선정자 증빙서류 (해당자)

※ 신청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8. 지원절차

-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금대출 : 협약금융기관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담보 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9. 대출취급 금융기관 : 11개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10.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받은자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대상 업종 제한

## 11.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
- 기 지원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
- 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 조치



## 충청북도 공고 제2015-16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2015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주민총수와 최소 연서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

(단위:명)

시군별	청구권자 총수(19세이상)					최 소 연 서 주민수
	계 (A=B+C+D-E)	내국인 (B)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C)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등록외국인 (D)	선거권 없는자 (E)	
합 계	191,042	1,298,364	748	1,050	1,248	12,990
청주시	52,678	679,995	436	340	450	
충주시	33,648	169,957	112	141	180	
제천시	78,007	112,236	43	126	185	
보은군	26,709	29,733	13	20	39	
옥천군	0	44,464	21	38	69	
영동군	잘못된 계산식	43,624	11	48	68	
증평군	잘못된 계산식	27,482	7	43	27	
진천군	잘못된 계산식	52,610	31	91	54	
괴산군	잘못된 계산식	33,651	22	30	55	
음성군	잘못된 계산식	77,899	42	151	85	
단양군	잘못된 계산식	26,713	10	22	36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연서대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충청북도 공고 제2015-17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  
(단위:명)

시군별	청 구 권 자 총 수(19세이상)					서 명 인 수	비 고
	계 (A=B+C+D-E)	내국인 (B)	국내거소신고 재 외 국 민 (C)	영주체류자격 갖춘 도내등록 외국인(D)	선거권 없는자 (E)		
합 계	218,745	1,298,364	748	1,498	1,248	64,969	
청주시	27,531	679,995	436	505	450		
충주시	52,733	169,957	112	195	180		
제천시	33,658	112,236	43	154	185		
보은군	78,109	29,733	13	20	39		
옥천군	26,714	44,464	21	38	69		
영동군	0	43,624	11	51	68		
증평군	잘못된 계산식	27,482	7	69	27		
진천군	잘못된 계산식	52,610	31	146	54		
괴산군	잘못된 계산식	33,651	22	40	55		
음성군	잘못된 계산식	77,899	42	253	85		
단양군	잘못된 계산식	26,713	10	27	36		

※ 서명인수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충청북도 공고 제2015-18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

<표1-도지사>

(단위:명)

시군별	청구권자총수(19세이상)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A=B+C-D)	내국인 (B)	등록외국인 (C)	선 거 권 없 는 자 (D)		
합 계	1,298,166	1,298,364	1,050	1,248	129,817	
청주시	679,885	679,995	340	450		12,982
충주시	169,918	169,957	141	180		12,982
제천시	112,177	112,236	126	185		11,218
보은군	29,714	29,733	20	39		2,972
옥천군	44,433	44,464	38	69		4,444
영동군	43,604	43,624	48	68		4,361
증평군	27,498	27,482	43	27		2,750
진천군	52,647	52,610	91	54		5,265
괴산군	33,626	33,651	30	55		3,363
음성군	77,965	77,899	151	85		7,797
단양군	26,699	26,713	22	36		2,670

- 산정된 서명인 수 129,817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3분의 1(4개) 이상의 시군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 서명인 수 : 시군별 청구권자 총수의 10%(최대 도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
- 내국인(B)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말함
- 등록 외국인(C)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함

<표2-도의원>

(단위:명)

시군별	선거구별	읍·면·동 별	청구권자총수(19세이상)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고
			계 (A=B+C-D)	내국인 (B)	등록외국인 (C)	선 거 권 없 는 자 (D)			
	제1선거구	계	68,027	68,067	9	49	13,606		
		내덕1동	9,008	9,015	0	7		681	2개등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내덕2동	11,959	11,970	5	16		681		
	울량사천동	35,841	35,853	3	15		681		
	오근장동	11,219	11,229	1	11		681		
제2선거구	계	68,187	68,167	63	43	13,638			

청주시

	중앙동	5,708	5,704	11	7		682	2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성안동	5,928	5,912	22	6		682	
	탑대성동	9,827	9,818	11	2		682	
	금천동	26,610	26,603	15	8		682	
	용담영합신성동	8,852	8,854	1	3		682	
	우암동	11,262	11,276	3	17		682	
제3선거구	계	64,027	64,008	41	22	12,806		
	용암1동	34,449	34,441	23	15		641	1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용암2동	19,549	19,545	9	5		641	
	영운동	10,029	10,022	9	2		641	
제4선거구	계	65,080	65,154	14	88	13,016		
	모충동	15,801	15,813	0	12		651	2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사직1동	8,310	8,309	11	10		651	
	사직2동	13,073	13,082	0	9		651	
	수곡1동	14,328	14,351	3	26		651	
	수곡2동	13,568	13,599	0	31		651	
제5선거구	계	47,649	47,672	9	32	9,530		
	분평동	25,860	25,867	3	10		259	각각 최소 1/100(1%) 이상 서명 필요
	산남동	21,789	21,805	6	22		218	
제6선거구	계	65,928	65,956	11	39	13,186		
	사창동	14,299	14,308	7	16		143	각각 최소 1/100(1%) 이상 서명 필요
	성화개신죽림동	51,629	51,648	4	23		517	
제7선거구	계	64,055	64,006	67	18	12,811		
	북대1동	48,063	48,027	45	9		481	각각 최소 1/100(1%) 이상 서명 필요
	북대2동	15,992	15,979	22	9		160	
제8선거구	계	59,187	59,156	50	19	11,838		
	가경동	41,284	41,262	34	12		413	각각 최소 1/100(1%) 이상 서명 필요
	감서1동	17,903	17,894	16	7		180	
제9선거구	계	53,318	53,298	43	23	10,664		
	감서2동	3,210	3,210	3	3		534	2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봉명2송정동	11,507	11,497	17	7		534	
	봉명1동	21,980	21,975	13	8		534	
	운천신봉동	16,621	16,616	10	5		534	
제10선거구	계	57,318	57,362	18	62	11,464		
(구청원1선거구)	남성면	2,178	2,179	0	1		436	3개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미원면	4,914	4,915	4	5		574	
	가덕면	3,961	3,969	0	8		574	
	남일면	6,489	6,497	1	9		574	
	남이면	6,495	6,502	0	7		574	
	문의면	4,170	4,171	0	1		574	
	현도면	3,612	3,616	1	5		574	
	강내면	9,097	9,106	2	11		574	
	오송읍	16,402	16,407	10	15		574	
제11선거구	계	67,109	67,149	15	55	13,422		
(구청원2선거구)	내수읍	16,990	17,008	0	18		672	2개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북이면	4,839	4,841	3	5		672	
	오창읍	37,024	37,037	11	24		672	

		옥산면	8,256	8,263	1	8		672		
	제1선거구	계	57,457	57,482	29	54	11,492			
충주시		주덕읍	5,174	5,180	4	10		575	3개읍면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살미면	2,001	2,000	1	0		401		
		수안보면	3,067	3,069	1	3		575		
		대소원면	4,802	4,804	4	6		575		
		신니면	3,188	3,188	2	2		575		
		노은면	2,271	2,272	0	1		455		
		양성면	3,984	3,987	1	4		575		
		중앙탑면	2,511	2,511	0	0		503		
		용산동	12,816	12,818	7	9		575		
		지현동	5,138	5,143	4	9		575		
		호암직동	8,542	8,546	3	7		575		
	달천동	3,963	3,964	2	3		575			
	제2선거구	계	54,392	54,393	60	61	10,879			
			금가면	3,453	3,457	1	5		544	3개면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동량면	3,644	3,649	1	6		544	
산척면			2,374	2,375	2	3		475		
엄정면			3,271	3,275	2	6		544		
소태면			1,796	1,797	0	1		360		
성내충인동			2,986	2,966	25	5		544		
문화동			9,793	9,790	17	14		544		
봉방동			8,619	8,623	5	9		544		
칠금금릉동			13,121	13,122	7	8		544		
목행용탄동	5,335	5,339	0	4		544				
제3선거구	계	58,069	58,082	52	65	11,614				
		교현안림동	18,669	18,684	14	29		581	1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교현2동	7,522	7,524	12	14		581		
		연수동	31,878	31,874	26	22		581		
제천시	제1선거구	계	65,509	65,555	93	139	13,102			
			봉양읍	6,425	6,465	1	41		656	3개읍면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백운면	3,020	3,031	3	14		604	
			송학면	4,534	4,547	0	13		656	
			의암동	7,388	7,386	9	7		656	
			청전동	16,209	16,192	34	17		656	
			인성동	6,055	6,033	28	6		656	
			영서동	7,064	7,075	6	17		656	
			용두동	14,814	14,826	12	24		656	
	제2선거구	계	46,668	46,681	33	46	9,334			
			금성면	1,892	1,894	0	2		379	3개읍면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침풍면	1,188	1,187	3	2		238	
			수산면	1,945	1,944	1	0		389	
			덕산면	2,049	2,053	0	4		410	
			한수면	719	719	0	0		144	
교동			14,284	14,286	10	12		467		
남현동			5,325	5,322	8	5		467		
신백동			10,394	10,393	6	5		467		

		화산동	8,872	8,883	5	16		467	
보은군	보은군선거구	계	29,714	29,733	20	39	5,943		
		보은읍	12,542	12,547	7	12		298	4개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속리산면	1,990	1,991	0	1		298	
		장안면	1,196	1,196	0	0		240	
		마로면	2,316	2,317	2	3		298	
		탄부면	1,764	1,765	1	2		298	
		삼승면	2,220	2,221	2	3		298	
		수한면	1,779	1,782	4	7		298	
		회남면	711	716	0	5		143	
		회인면	1,764	1,766	0	2		298	
		내북면	1,719	1,719	1	1		298	
		산외면	1,713	1,713	3	3		298	
옥천군	제1선거구	계	23,609	23,610	25	26	4,722		
		옥천읍	23,609	23,610	25	26		4,722	청구권자 총수의 20/100(20%)이상 서명 필요
	제2선거구	계	20,824	20,854	13	43	4,165		
		동이면	2,992	2,994	1	3		209	3개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안남면	1,322	1,326	2	6		209	
		안내면	1,948	1,945	4	1		209	
		청성면	2,313	2,317	2	6		209	
		청산면	3,106	3,107	1	2		209	
		이원면	4,142	4,157	0	15		209	
		군서면	2,122	2,123	0	1		209	
	군북면	2,879	2,885	3	9		209		
영동군	제1선거구	계	23,669	23,671	32	34	4,734		
		영동읍	17,892	17,889	28	25		237	1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양강면	3,022	3,026	1	5		237	
		학산면	2,755	2,756	3	4		237	
	제2선거구	계	19,935	19,953	16	34	3,987		
		용산면	3,272	3,269	5	2		200	3개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황간면	4,161	4,165	1	5		200	
		추풍령면	2,301	2,308	2	9		200	
		매곡면	1,923	1,922	2	1		200	
		상촌면	2,280	2,285	0	5		200	
		용화면	933	937	2	6		187	
	양산면	1,880	1,882	2	4		200		
	심천면	3,185	3,185	2	2		200		
증평군	증평군	계	27,498	27,482	43	27	5,500		
		증평읍	25,489	25,473	41	25		255	각각 1/100(1%) 이상 서명 필요
		도안면	2,009	2,009	2	2		21	
진천군	제1선거구	계	29,351	29,319	58	26	5,871		
		진천읍	23,814	23,781	54	21		294	1개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문백면	3,526	3,524	4	2		294	
		백곡면	2,011	2,014	0	3		294	
	제2선거구	계	23,296	23,291	33	28	4,660		
		덕산면	4,956	4,958	5	7		233	

		초평면	3,189	3,188	3	2	233	2개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이월면	6,411	6,414	10	13	233		
		광혜원면	8,740	8,731	15	6	233		
괴산군	괴산군	계	33,626	33,651	30	55	6,726	4개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괴산읍	8,287	8,304	9	26	337		
		감물면	1,817	1,817	2	2	337		
		장연면	1,856	1,859	0	3	337		
		연풍면	2,255	2,252	3	0	337		
		칠성면	2,781	2,781	1	1	337		
		문광면	1,594	1,591	4	1	319		
		청천면	4,712	4,713	5	6	337		
		청안면	3,149	3,150	2	3	337		
		사리면	2,658	2,664	1	7	337		
		소수면	1,842	1,841	2	1	337		
		불정면	2,675	2,679	1	5	337		
음성군	제1선거구	계	27,440	27,428	42	30	5,488	2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음성읍	15,419	15,407	29	17	275		
		소이면	2,881	2,875	7	1	275		
		원남면	2,899	2,898	1	0	275		
	제2선거구	계	50,525	50,471	109	55	10,105	2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금왕읍	17,044	17,024	41	21		506
			대소면	12,994	12,966	37	9		506
			삼성면	7,010	7,000	18	8		506
			생극면	4,251	4,250	4	3		506
			갑곡면	9,226	9,231	9	14		506
단양군선거구	계	26,699	26,713	22	36	5,340	3개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단양읍	9,058	9,061	11	14	267			
	단성면	1,666	1,668	0	2	267			
	대강면	2,320	2,322	1	3	267			
	적성면	1,487	1,487	2	2	267			
	매포읍	5,400	5,404	0	4	267			
	가곡면	1,909	1,917	2	10	267			
	영춘면	3,142	3,136	6	0	267			
어상천면	1,717	1,718	0	1	267				

1.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 서명인 수 :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20%(최대 관할 선거구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  
 ※ 다만, 선거구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2. 내국인(B)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3. 등록 외국인(C)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함

**시군행정**

제천시 고시 제2015-7호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제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⑥	전기 공급설비	제천시 모산동 316	제천시 고암동 565-4	-	1.427	813		

- 전기공급설비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⑥	전기공급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공급설비 신설</li> <li>- 연장 : 1.427km</li> <li>- 면적 : 8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시 고암, 모산동 일원을 경과하고 있는 일부구간(55호~60호)의 건물신축, 지반성토 등으로 인한 일반인 안전사고 및 설비고장의 우려로 인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송전선로의 이설</li> </ul>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등 : 실음(계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지역개발과(☎043-641-62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제천시 고시 제2015-8호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3-459]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3-459)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제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59	6	국지 도로	383	제천시 장락동 695-44 (대로1-1)	제천시 장락동 706 (중로3-24)	일반 도로		2012. 02.24	-
변경	소로	2	456	8	국지 도로	383	제천시 장락동 695-44 (대로1-1)	제천시 장락동 706 (중로3-24)	일반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459	소로 2-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변경 없음 383m → 383m</li> <li>폭원변경 6m → 8m</li> </ul>	(가) 기 결정 도로는 폭6m(길어깨 제외 포장폭 4.6m) 단일차로인 차도로 지역에 유동차량 증가로 기 결정된 도로 폭원으로는 유동 차량의 교행 및 보행자의 보행여건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선의 폭원 확장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 생략(제천시청 지역개발과에 비치)

3.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지역개발과(☎043-641-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증평군 고시 제2015-2호

### 증평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8일 수립된 증평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증 평 군 수

#### 1.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함.

2. 사업명 : 증평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3. 위 치 : 증평군 일원

4. 사업비 : 46,850백만원 (국비 : 32,795백만원, 지방비 : 14,055백만원)

5. 사업기간 : 2011.01 ~ 2015.12 (5년간)

6.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7. 사업내용

권역별	세부사업명	규모 (㎡)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본 시설 조성 사업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30,235	31,250	2차선 도로 확포장 및 개착식 터널 개설사업  ( L=2.5km, B=12m )	2차선 도로 확포장 및 터널 개설사업, 지질생태둘레길	15,000	18,800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	2,445	33,344	2차선 도로 선형개량 및 통로박스 확장  ( L=0.3km, B=8m )	4차선 도로 선형개량 및 통로박스 확장  ( L=1.4km, B=18.5m )	12,000	16,900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	9,637	13,910	2차로 진입도로 개설사업  (L=0.9km, B=10m) (L=1.1km, B=10m)		3,150	3,150
	울리웰빙공원 조성사업	52,599	53,593	생태공원, 야외공연장등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등	8,000	8,000
	소 계	94,916	132,097	-		38,150	46,850

8. 사업별 투자계획

사업명			재원별내역(백만원)				비고(국비지원부처)		
			총계	국비	지방비	민자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기본 시설 조성 사업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기정	15,000	10,500	4,500	-	-	10,500	-
		변경	18,800	13,160	5,640	-	-	13,160	-
		증감	증) 3,800	증) 2,660	증) 1,140	-	-	증) 2,660	-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	기정	12,000	8,400	3,600	-	-	8,400	-
		변경	16,900	11,830	5,070	-	-	11,830	-
		증감	증) 4,900	증) 3,430	증) 1,470	-	-	증) 3,430	-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	-	3,150	2,205	945	-	-	2,205	-
	울리웰빙공원 조성사업	-	8,000	5,600	2,400	-	-	5,600	-
	소 계	기정	38,150	26,705	11,445	-	-	26,705	-
		변경	46,850	32,795	14,055	-	-	32,795	-
증감		증) 8,700	증) 6,090	증) 2,610	-	-	증) 6,090	-	

9. 열람장소 : 증평군청 안전건설과

10. 기타사항

- 증평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본계획서의 내용에 따른다.

진천군 고시 제2015-5호

진천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일원의 진천읍 군계획시설(도로) 중로1-4호선, 중로2-9호선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진 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673-1번지 일원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진천읍(중로1-4, 중로2-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읍면별	노 선 명	총연장 (m)	금회시공			기 점	종 점
			연장 (m)	폭 (m)	면적 (㎡)		
	합 계	1,808	447		10,275		
진천읍	진천읍(중로1-4호선)	1,241	367	21	8,925	중로1-4 (교성리 산10-18)	중로1-3 (신정리 761-15)
	진천읍(중로2-9호선)	567	80	15	1,350	중로2-9 (교성리 63-17)	중로1-4 (신정리 673-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성명 : 진 천 군 수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 ~ 2017. 12. 31.

6. 사용, 수용할토지 및 지장물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기타 관련서류는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투자개발2팀(☎539-3982)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토 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

공사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중1-4, 중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동,리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진천	교성	66-5	66-5	잡	662	22	양인정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65, 606동 202호				1/2
								최성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65, 606동 202호				1/2
2	진천	교성	66-2	66-2	도	13	12	국	진천군				
3	진천	교성	592	592	도	747	148	국	건설부				
4	진천	교성	66-4	66-4	잡	134	2	국	진천군				
5	진천	교성	591-1	591-1	구	1,240	100	국	농림부				
6	진천	교성	산10-18	산10-18	임	816	148	주식회사 대명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8				
7	진천	교성	산9-2	산9-14	임	28,588	98	여흥민생 사공매양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8	진천	교성	63-17	63-17	전	968	955	국	진천군				
9	진천	교성	63-4	63-4	도	90	90	국	진천군				
10	진천	교성	63-1	63-19	전	1,322	9	대전광역시 회유지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6				
11	진천	교성	63-3	63-3	도	221	151	국	진천군				
12	진천	교성	63-5	63-5	도	56	56	국	진천군				
13	진천	교성	63-1	63-20	전	1,322	102	대전광역시 회유지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6				
14	진천	교성	63-6	63-21	전	635	365	이명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부평동 320 우성아파트 102-120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2)

공사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중1-4, 중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평일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동·리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5	진천	교성	63-8	63-22	대	531	220	김철중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97	현대오 일뱅크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읍 평신2로 182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읍 평신2로 182	근저당	
16	진천	교성	산9-4	산9-4	임	60	60	국	진천군						
17	진천	교성	63-16	63-26	대	268	54	김철중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97						10/12
								민홍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102-605						1/12
								심천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71-29						1/12
18	진천	교성	63-15	63-25	대	793	149	민홍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아파트 102-605						1/2
								심천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71-29						1/2
19	진천	교성	0-187	0-187	가		557								
20	진천	교성	63-9	63-23	종	1,653	9	대한생명화 유지재단	서울 중구 정동 3						
21	진천	교성	산9-5	산9-5	임	1,967	1,788	국	진천군						
22	진천	교성	63-10	63-24	종	3,306	35	대한생명화 유지재단	서울 중구 정동 3						
23	진천	교성	산9-8	산9-15	임	1,653	39	김기섭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633	진천세아 올림픽고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28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289	근저당	1/4
								지현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534-2						1/4
								이미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653 쌍용모던아파트 5-1305						1/4
								심재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00-5						1/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3)

공사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중1-4, 중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소유 자		성 명	관 계 인		비 고
	시·군·동·리	교성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4	진천	교성	산9-8	산9-8	임	1,653	82	김기섭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633	진천세마 읍금고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289	권리관계 근저당	1/4
								지현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534-2				1/4
								이미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653 쌍용모란아파트 5-1305				1/4
								심재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00-5				1/4
25	진천	교성	산9-12	산9-16	임	1,653	31	김기섭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633	진천세마 읍금고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289	근저당· 지상권	1/4
								지현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2길 14, 202동 602호				1/4
								이미숙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137				1/4
								심재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당안길 10-1				1/4
26	진천	교성	산9-12	산9-12	임	1,653	315	김기섭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633	진천세마 읍금고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289	근저당· 지상권	1/4
								지현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2길 14, 202동 602호				1/4
								이미숙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137				1/4
								심재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당안길 10-1				1/4
27	진천	교성	산9-2	산9-2	임	28,568	593	이윤미 서영미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28	진천	교성	0-188	0-188	가		1,717						
29	진천	신정	673-1	673-1	도	118	102	국	진천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4)

공사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중1-4, 중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성명	관 계 인			비 고
	시,군	동,리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30	진천	신정	673	673	대	665	5	반정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7-16 양지아파트 101-306					
31	진천	신정	675-34	675-34	전	315	13	신현욱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10					
32	진천	신정	675-35	675-35	전	870	30	조기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91, 203동 604호					
33	진천	신정	675-7	675-7	도	17	17	국	진천군					
34	진천	신정	675-25	675-25	전	350	350	국	진천군					
35	진천	신정	675-26	675-26	전	61	61	국	진천군					
36	진천	신정	675-6	675-38	대	8,425	174	주식회사 천호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북문로 3가 44-11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37	진천	신정	675-10	675-10	도	106	106	주식회사 천호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북문로 3가 44-11					
38	진천	신정	792	792	도	1,379	565	국	건설부					
39	진천	신정	675-14	675-40	임	1,439	367	오영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89-1					
40	진천	신정	675-11	675-11	도	100	100	주식회사 천호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북문로 3가 44-11					
41	진천	신정	675-23	675-41	도	59	50	오영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89-1					
42	진천	신정	675-24	675-42	임	152	84	진천침례교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61-3	진천보영빌딩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61-3		근저당, 지상권	
43	진천	신정	675-8	675-39	중	1,528	110	진천침례교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61-3	4·신영빌딩조합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1		근저당, 지상권	
44	진천	신정	675-12	675-12	도	32	32	국	진천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5)

공사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종1-4, 종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관입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동,리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45	진천	신정	790-1	790-2	종	214	13	진천함 례교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61-3	수신영합 동조합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1	근저당, 지상권	
46	진천	신정	761-5	761-5	도	243	243	국	진천군				
47	진천	신정	761-11	761-17	전	618	419	백정기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81				
48	진천	신정	761-13	761-18	전	245	121	백정기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81				
49	진천	신정	761-16	761-19	대	1,651	137	노재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73	속신영합 동조합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근저당	
50	진천	신정	산37-8	산37-8	도	8,444	24	국	진천군				
51	진천	신정	761-6	761-6	도	42	42	국	진천군				
52	진천	신정	761-4	761-4	전	383	383	관오빈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2-6				
53	진천	신정	761-14	761-14	도	27	27	국	진천군				
54	진천	신정	761-7	761-7	도	19	19	국	진천군				
55	진천	신정	761-15	761-15	도	19	19	국	진천군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지 장 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

공시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중1-4, 중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 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 위	소유자		비 고
	시·군	동·리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1	진천	교성	63-8	63-22	대	이동식화장실	H=3.0m	1	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97	김철중	
						과실수		2	주			
						아카시아		10	주			
2	진천	교성	63-10	63-24	중	성당간판	H=2.5m	1	개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	재단법인 대한상공회의소재단	
						교회간판	H=2.5m	1.0	개소			
						매세웬스	H=1.5m	65.0	m			
						보안등	웬스부착식	4.0	EA			
						LED전구	수목연결식	10.0	식			
						정화조	대용량	1.0	식			
						도로경계석	H=0.2m	65.0	m			
						철재웬스	H=1.0m	9.0	m			
						기념비	표시석	1.0	식			
						CCTV		1.0	개소			
						측구수로	0.2 x 0.2	24.0	m			
						조경석	H=1.0m	226.0	m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2)

공사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중1-4, 중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 위	소유자		비 고
	시·군	동·리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소나무		1.0	주			
						주목나무		2.0	주			
						조경수		1.0	주			
3	진천	교성	63-10	63-24	종	고엽나무		5.0	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	제단법인 대한상공회의소재단	
						모과나무		7.0	주			
						산수유		3.0	주			
						단풍나무		4.0	주			
						목단		1.0	주			
						에셀나무		1.0	주			
						은행나무		1.0	주			
						라일락		1.0	주			
						과실수		1.0	주			
						향나무		4.0	주			
						잣나무		1.0	주			
						반송		10.0	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3)

공사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중1-4, 중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 위	소유자		비 고
	시,군 동,리	교성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단풍나무		1.0	주			
						소나무		1.0	주			
						목련		1.0	주			
						영신홍		70.0	m2			
						회양목		29.0	m2			
4	진천	교성	675-6	675-38	대	가죽건물	샌드위치판넬	4.8	m2	충청북도 청주시 복문로 3가 44-11	주식회사 천호건설	휴게실
5	진천	교성	675-6	675-38	대	웬스	h=1.1m	3.0	m	충청북도 청주시 복문로 3가 44-11	주식회사 천호건설	
						표시석	h=2.1m	1.0	식			
						계단	1.8 x 8.5	14.4	m2			cont'c
						목조데크	1.6 x 3.3	5.3	m2			h=1.3m
6	진천	교성	675-14	675-40	임	철재간판	h=2.0m	1.0	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89-1	오영균	
						파이프웬스	h=1.8m	58.0	m			
7	진천	교성	675-23	675-41	도	철재간판	h=1.5m	2.0	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89-1	오영균	
						웬스	h=1.0m	14.0	m			
8	진천	교성	675-8	675-39	종	조경석	h=0.4m	10.0	m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61-3	진천침례교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4)

공시명 :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중1-4, 중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 건 의 증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 위	소유자		비 고
	시·군	동·리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항나무		7.0	주			
						소나무		2.0	주			
9	진천	교성	761-11	761-17	전	파이프웬스	h=1.0	13.0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81	백정기	
						벚나무		1.0	주			
						단풍나무		4.0	주			
						사과나무		9.0	주			
						청단풍		1.0	주			
						대추나무		3.0	주			
						감나무		3.0	주			
10	진천	교성	761-11	761-17	전	모과나무		2.0	주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81	백정기	
11	진천	교성	761-16	761-19	대	컨테이너	3.0 x 6.0	1.0	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73	노재명	
						건사	1.1 x 1.1	2.0	식			
						블루베리		6.0	주			
						배나무		2.0	주			
						자두나무		2.0	주			

괴산군 고시 제2015-3호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괴산군 괴산읍 능촌·사창리 일원의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괴 산 군 수

□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계획 승인사항

1. 농공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단지종류 : 지역특화농공단지
- 명 칭 :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발효식품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괴산군의 급증하는 공장수요에 따른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기업의 계획입지를 통하여 우리군의 청정자연 환경을 보존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사창리 일원
- 면 적 : 기정 - 323,511㎡  
          변경 - 321,318㎡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 ~ 2013년  
          변경 - 2008년 ~ 2015년 6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음료(C10,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H52)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증분류 CODE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소 계	-	224,034	100.0	223,740	100.0	감)294㎡
식료품·음료	C10,C11	117,974	52.6	117,806	52.7	감)16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436	11.4	23,514	10.5	감)1,99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80,624	36.0	82,420	36.8	증)1,796㎡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격정로 90
- 사업시행자의 성명 : 괴산군수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323,511	100.0	321,318	100.0	감)2,193㎡
산업시설용지	224,034	69.3	223,740	69.7	감)294㎡
산업시설용지(가공)	143,410	44.3	141,320	44.0	감)2,090㎡
산업시설용지(물류)	80,624	25.0	82,420	25.7	증)1,796㎡
지원시설용지	15,452	4.8	15,229	4.7	감)223㎡
공공시설용지	44,094	13.6	45,737	14.2	증)1,643㎡
도 로	35,997	11.1	36,858	11.5	증)861㎡
주 차 장	2,893	0.9	2,712	0.8	감)181㎡
유 수 지	3,878	1.2	3,832	1.2	감)46㎡
배 수 지	1,326	0.4	2,335	0.7	증)1,009㎡
녹지용지	39,931	12.3	36,612	11.4	감)3,319㎡
공 원	9,131	2.8	8,004	2.5	감)1,127㎡
완 충 녹 지	30,800	9.5	28,608	8.9	감)2,192㎡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교통시설(변경)

가)도로(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m)		노선수 (개)	연장 (m)	노선수 (개)	연장 (m)	노선수 (개)	연장(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	2,474	2,445	-	-	6	2,113	3	361	332
대 로	1	108	-	-	-	-	-	1	108	-
중 로	4	1,897	-	-	-	4	1,897	-	-	-
소 로	4	469	440	-	-	2	216	2	253	224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108	중로 2-4	중로 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51	대로 3-1	중로 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413	대로 3-1	중로 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609	중로 2-2	대로 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보조 간선도로	224	소로 2-1	소로 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10	보조 간선도로	109	단지 구역계	중로 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보조 간선도로	107	중로 2-4	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16	중로 2-3	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37	중로 2-1	배수지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2	5	국지도로	108	중로 2-1	배수지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	소로3-2	·도로의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변경: 4m→5m - 연장변경: 137m→108m	·배수지 변경에 따른 진입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나)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노외 주차장	괴산읍 능촌리 산45번지 일원	2,893	감)181	2,712	-	면적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주차장면적변경 2,893m <sup>2</sup> → 2,712m <sup>2</sup>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면적변경

2)공간시설(변경)

가)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	2개소	-	-	30,800	감)2,192	28,608	-	면적변경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괴산읍 능촌리 산41번지 일원	16,445	증)630	17,075	-	면적변경
변경	2	녹지	완충 녹지	괴산읍 능촌리 산53번지 일원	14,355	감)2,822	11,533	-	면적변경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면적변경 16,445m <sup>2</sup> → 17,075m <sup>2</sup>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증가
2	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면적변경 14,355m <sup>2</sup> → 11,533m <sup>2</sup>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감소

나)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발효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괴산읍 능촌리 산44번지 일원	9,131	감)1,127	8,004	-	공원의 종류 및 면적변경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소공원	·공원 종류 변경 근린공원 → 소공원 ·공원면적변경 9,131m <sup>2</sup> → 8,004m <sup>2</sup>	·근린공원 기준 면적에 부합되지 않아 소공원으로 변경 ·배수지면적 및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수도시설(변경)

■ 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배수지	괴산읍 능촌리 산44번지 일원	1,326	증)1,009	2,335	-	면적 변경

■ 수도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배수지	·배수지면적변경 1,326m <sup>2</sup> → 2,335m <sup>2</sup>	·대제산업단지와 배수지 통합관리에 따른 면적변경

4)방재시설(변경)

가)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유수지	유수시설	괴산읍 능촌리 70번지 일원	3,878	감)46	3,832	-	면적 변경

■ 유수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유수지면적변경 3,878m <sup>2</sup> → 3,832m <sup>2</sup>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근거법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단지조성비의 지원 (제13조) - 괴산군은 추가지원대상지에 속함

구 분	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	
	일반	추가·우선지원
국비보조	30	70
지방비보조	10	10

-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 3) 잔여소요는 지방비용자(기체)로 충당함
- 4)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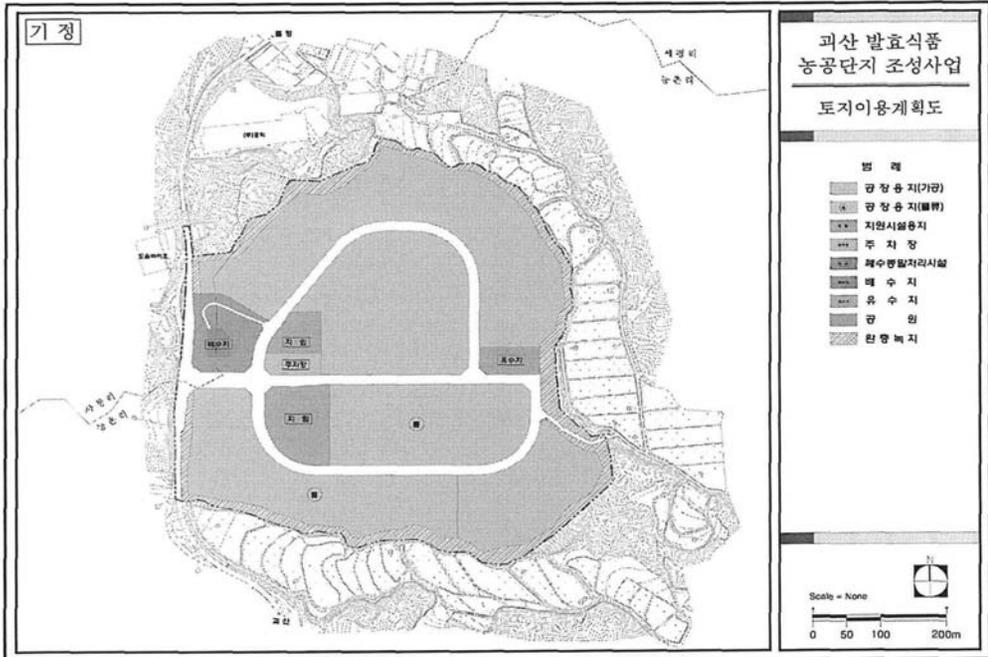
###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청도청 투자유치과(☎043-220-3337) 및 괴산군 경제과(☎043-830-33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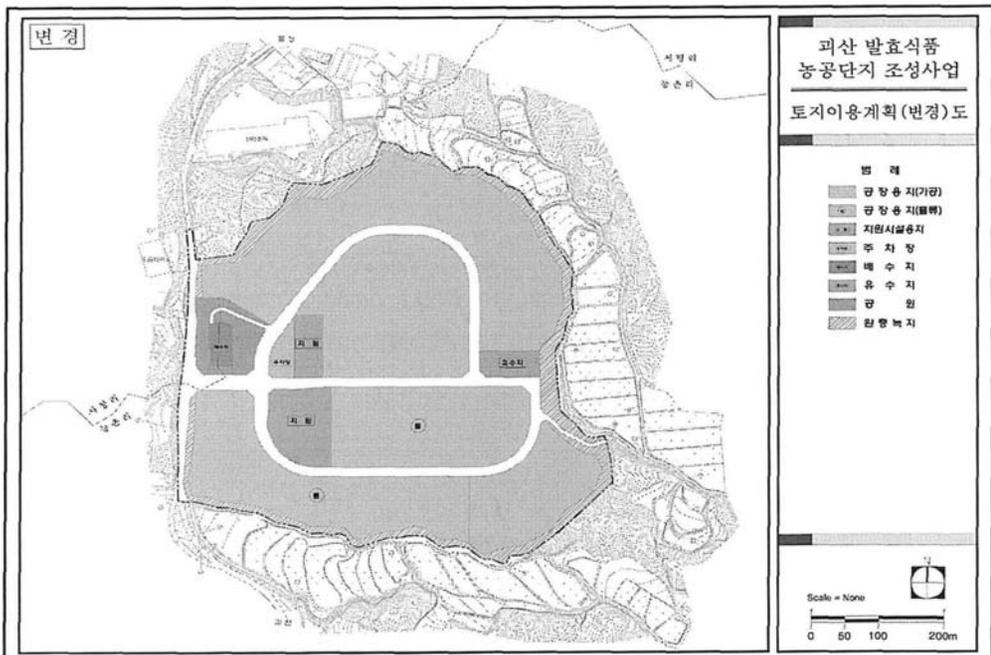
(관계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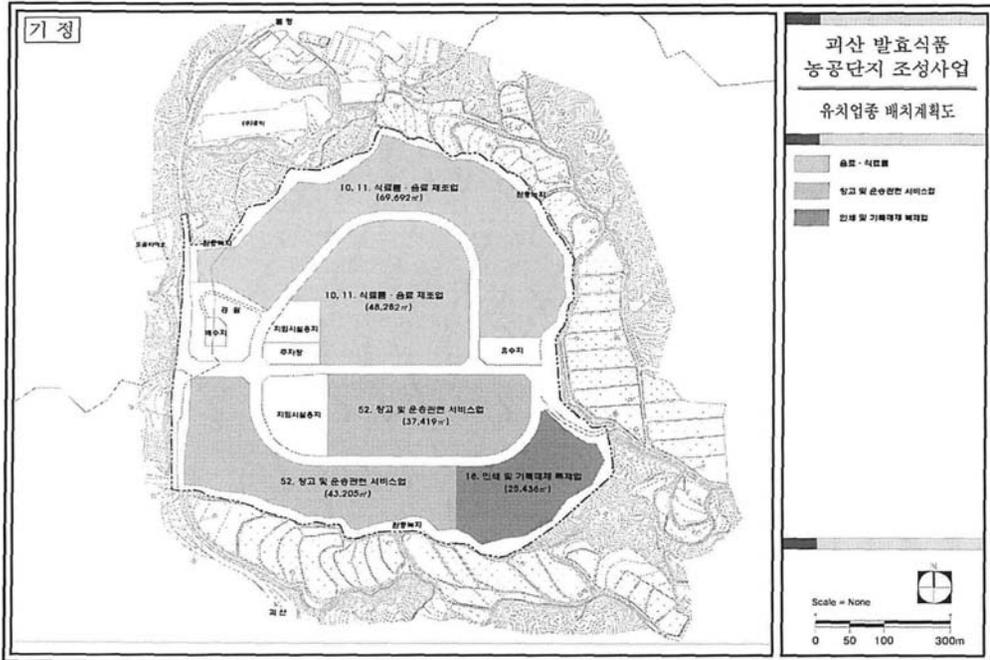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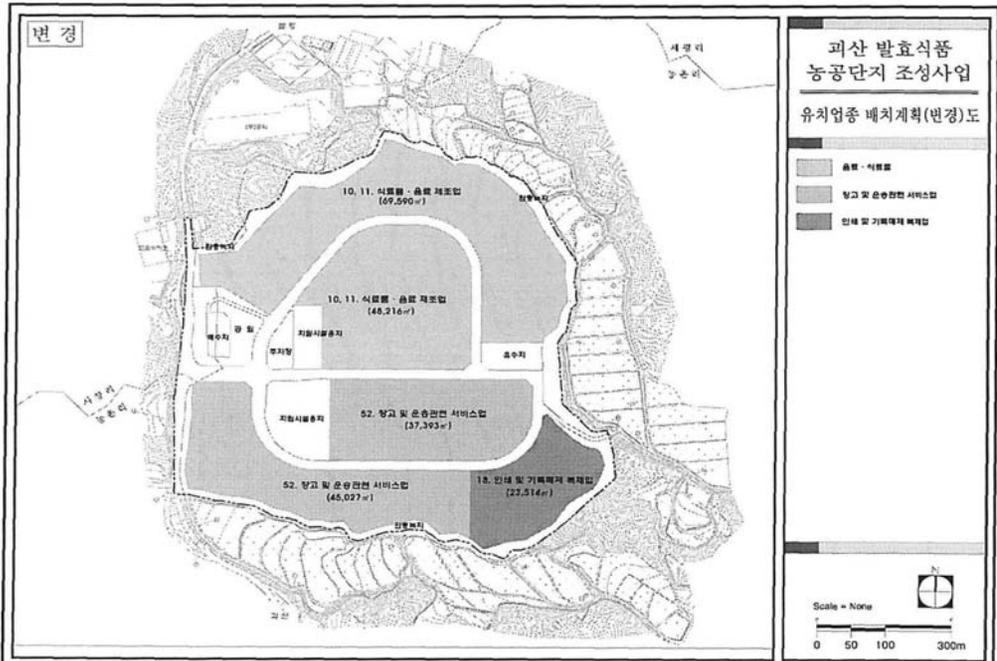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변경)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기정 >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변경 >



충주시 공고 제2015-15호

충주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진달래동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충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진달래  
동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
- 명칭 :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공동묘지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969,15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기 정 :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이사장 김선교
  - 변 경 :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이사장 박오성
- 주 소 : 충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번지 일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0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 열람기간 : 2015. 01. 09. ~ 2015. 01. 23.

8. 기타 관련서류는 충주시청 지역개발과(☎043-850-61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공동묘지 조성사업】 (단위 : m<sup>2</sup>)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면적	소재지			지적	원일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양성	본평	산43-13	임	925,615	925,615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	"	584	답	2,919	2,919	김신교		홍주시 연수동 931 임광@ 101-907			
3	"	"	584-1	답	149	149	심상희		홍주시 용산동 영진보람@ 104-806			
4	"	"	585	답	1,101	1,101	심상희		홍주시 용산동 영진보람@ 104-806			
5	"	"	584-3	답	2,711	2,711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홍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6	"	"	584-2	답	717	717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홍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7	"	"	산28	묘	18,689	18,689	홍주시					
8	"	"	산28-1	묘	275	275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홍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9	"	"	산28-2	묘	871	871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홍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10	"	"	산52	임	1,587	1,587	곽창식					
11	"	"	706	천	2,013	1,000	김신교		홍주시 연수동 931 임광@ 101-907			
12	"	"	707	천	1,038	1,038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홍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13	"	"	709	천	11,823	3,033	국(건설부)					
14	양성	지답	357	대	652	652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홍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15	"	"	357-1	천	1,937	191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홍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16	"	"	357-2	천	1,997	1,886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홍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17	"	"	358	천	965	965	김신교		홍주시 연수동 931 임광@ 101-907			
18	"	"	731	천	8,502	5,758	국(농림축산식품부)					
누 계					983,561	969,157						

제천시 공고 제2015-1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제천시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을 등록·폐기하고 동 조례 제10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제 천 시 장

□ 등록 공인 인영: 14개 (최초사용일: 2015. 1. 5)

공인명칭	공 인 인 영	서체 및 규격	폐기사유
제천시기획예산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
제천시기획예산담당관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
제천시홍보학습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
제천시홍보학습담당관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
제천시감사법무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

<p>제천시감사법무담 당관분임물품출납 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p>제천시시민행복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p>제천시시민행복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p>제천시여성가족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p>제천시여성가족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p>제천시노인장애인 과일상경비출납원 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p>제천시노인장애인 과분임물품출납원 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p>제천시경제과일상 경비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p>제천시경제과분임 물품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신규등록</p>

□ 폐기 공인 인영: 14개 (폐기일: 2015. 1. 5)

공인명칭	공 인 인 영	서체 및 규격	폐기사유
기획예산담당관일 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기획예산담당관분 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홍보학습담당관일 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홍보학습담당관분 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감사법무담당관일 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감사법무담당관분 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시민행복과일상경 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시민행복과분임물 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여성가족과일상경 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	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

<p>여성가족과분임물 품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p>
<p>노인장애인과일상 경비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p>
<p>노인장애인과분임 물품출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p>
<p>경제과일상경비출 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p>
<p>경제과분임물품출 납원인</p>		<p>한글전서체 2.0cm x 2.0cm 정방형</p>	<p>관서명누락으로 인한 폐기</p>

## 영동군 공고 제2015-19호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영 동 군 수

- 1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56-14번지와 3필지
- 2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부용리(신양아파트뒤) 군계획도로개설공사
- 3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시 점	종 점	비고
소로3-49호	L=122.0M B=6.0M	영동읍 부용리 56-14	영동읍 부용리 56-5	

- 4 .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
  - 성 명 : 영 동 군 수
- 5 .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6. 12. 30일까지
- 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 7 . 열람기간 : 도보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8 . 기타 : 기타 관련서류는 영동군청 도시건축과(☎043-740-337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관계인 주소성명

일련 번호	읍 리	지 번	지장물명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 위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이외의 권리자			비 고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1	부용	56-14	뽕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10 1 4	주 주 주	영동군 영동읍 부용3길 7		강석재				
2		56-5	담장	H=2.65m	9	m	영동읍 부용1길 5-6		배재영				
3	설계	611-12	대추나무 자두나무		1 8	주 주	영동군 영동읍 논어치2로 24		고재훈				
			표고목	3년	1	식							
			담장	블록	5	m							

증평군 공고 제2015-14호

공인 등록 공고

증평군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증 평 군 수

아 래

- 1. 공인사용 및 폐기일 : 2015. 1. 2.
- 2. 사 유
  -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 3. 신조 공인 인영

공 인 명	인 영	규 격 (cm)	글 씨	재 질	비 고
증평군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운용관인		2.0×2.0	등근고딕체	목재	등록
증평군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출납원인		2.0×2.0	등근고딕체	목재	등록

## 음성군 공고 제2015-8호

## 음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의 공고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2015년 1월 9일

음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4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면 적 : A= 3,858㎡
  - 규 모 : 건축면적(면사무소 420.07㎡, 소방서 123.40㎡, 보건지소 284.13㎡)  
연면적(면사무소 731.92㎡, 소방서 245.68㎡, 보건지소 443.2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시 행 자 : 음성군수(안전총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5. 인가기간 및 준공일
  - 인가기간 : 2014. 5. 23. ~2014. 12. 31.
  - 준공일자 : 2014. 12. 26. (준공검사일)

음성군 공고 제2015-9호

**공인 신조 등록 공고**

「음성군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음 성 군 수

1. 공인 신조 사유 :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공인 신조
2.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5년 1월 6일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신조 공인명					
공인명	규격	인영	공인명	규격	인영
음성군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관인	2.1cm 정사각형 목재 훈민정음체		음성군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출납원인	2.1cm 정사각형 목재 훈민정음체	
음성군 유기농소득 개발기금 운용관인	2.1cm 정사각형 목재 훈민정음체		음성군 유기농소득 개발기금 출납원인	2.1cm 정사각형 목재 훈민정음체	

## 단양군 공고 제2015-2호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및 매포읍 하괴리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이해관계인은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9일

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매포읍 하괴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단양-가곡간 도로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59,094m<sup>2</sup>
  - 가. 단양대로3-3호 : L=1,167m, B=18.5~20.5m
  - 나. 매포대로3-2호 : L= 363m, B=18.5~20.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2007. 12. 14. ~ 2014. 12. 31.  
(변경)2007. 12. 14.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와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이면기재

7. 열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5. 01. 09. ~ 01. 23.(15일간)
- 공람장소 : 단양군청 균형개발과 지역계획팀(043-420-280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와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편입토지 미보상 조서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분할 지번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보 상 액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1+370L	85-9	전		89	89		산업기지 개발공사	충남대전시동구연축동 산6-2	기존군도 미불용지
2	1+380R	85-8	도		830	830		산업기지 개발공사	충남대전시동구연축동 산6-2	"
3	1+390R	85-5	도		112	112		산업기지 개발공사	충남대전시동구연축동 산6-2	"
4	1+400R	산20-6	임		1,089	79		김상길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2	
5	1+460R	산20-22	임		423	140		김상길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2	
6	1+500R	산20-10	임		1,534	60		서인석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27-27	
소 계			6필지		4,077	1,310				

## 기 타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5-4호

## 2014년도 제2-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고시

2014년도 제2-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합 계	14,921,755	2,249,306,150	2,264,227,905	0.7	
1. 이전수입	14,921,755	1,924,795,800	1,939,717,555	0.8	
- 중앙정부이전수입	14,643,127	1,648,838,294	1,663,481,421	0.9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264,391,576	264,391,576	0.0	
- 기타이전수입	278,628	11,565,930	11,844,558	2.4	
2. 자체수입	0	65,519,638	65,519,638	0.0	
- 교수·학습활동수입	0	34,399,041	34,399,041	0.0	
- 행정활동수입	0	1,289,073	1,289,073	0.0	
- 자산수입	0	17,231,096	17,231,096	0.0	
- 이자수입	0	6,446,437	6,446,437	0.0	
- 기타수입	0	6,153,991	6,153,991	0.0	
3. 차입	0	172,428,467	172,428,467	0.0	
- 지방교육채	0	172,428,467	172,428,467	0.0	
4. 기타	0	86,562,245	86,562,245	0.0	
- 전년도이월금	0	86,562,245	86,562,245	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합 계	14,921,755	2,249,306,150	2,264,227,905	0.7	
1. 유아및초중등교육	274,412	2,051,814,191	2,052,088,603	0.0	
- 인적자원운용	29,412	1,119,980,763	1,120,010,175	0.0	
- 교수-학습활동지원	0	164,791,823	164,791,823	0.0	
- 교육복지지원	245,000	323,639,357	323,884,357	0.1	
- 보건/급식/체육활동	0	19,056,783	19,056,783	0.0	
- 학교재정지원관리	0	295,487,138	295,487,138	0.0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0	128,858,327	128,858,327	0.0	
2. 평생·직업교육	0	4,215,609	4,215,609	0.0	
- 평생교육	0	3,429,669	3,429,669	0.0	
- 직업교육	0	785,940	785,940	0.0	
3. 교육일반	14,647,343	193,276,350	207,923,693	7.6	
- 교육행정일반	0	29,459,524	29,459,524	0.0	
- 기관운영관리	0	20,605,907	20,605,907	0.0	
- 지방채상환및리스크	0	111,202,486	111,202,486	0.0	
- 예비비및기타	14,647,343	32,008,433	46,655,776	45.8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5-5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1. 조례명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여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안 제3조, 제20조, 제33조)

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 신설  
(안 제34조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다.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4조, 제30조)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43-290-2622~3, 팩스 : 043-290-2744

○ E-mail : wmy9307@cbe.go.kr

- ※ 붙임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 호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표의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필요한 때”을 “필요할 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발생한 때”을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완공한 때”를 “완공하였을 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발생한 때”을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필요한 때”을 “필요할 때”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7호서식
3.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서식 번호 중 “별지 제9-1호서식”을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9-2호서식”을 “별지 제9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을 “별지 제9호의4서식”으로, “별지 제9-4호서식”을 “별지 제9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면)

변 상 금 징 수 유 예 신 청 서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신청사유

⑥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부과면적 (m <sup>2</sup> )	변상금 (원)	유예신청금액 (원)	징수유예기간
소재지	지목	지적 (m <sup>2</sup> )				
						( )개월
						( )개월
						( )개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붙임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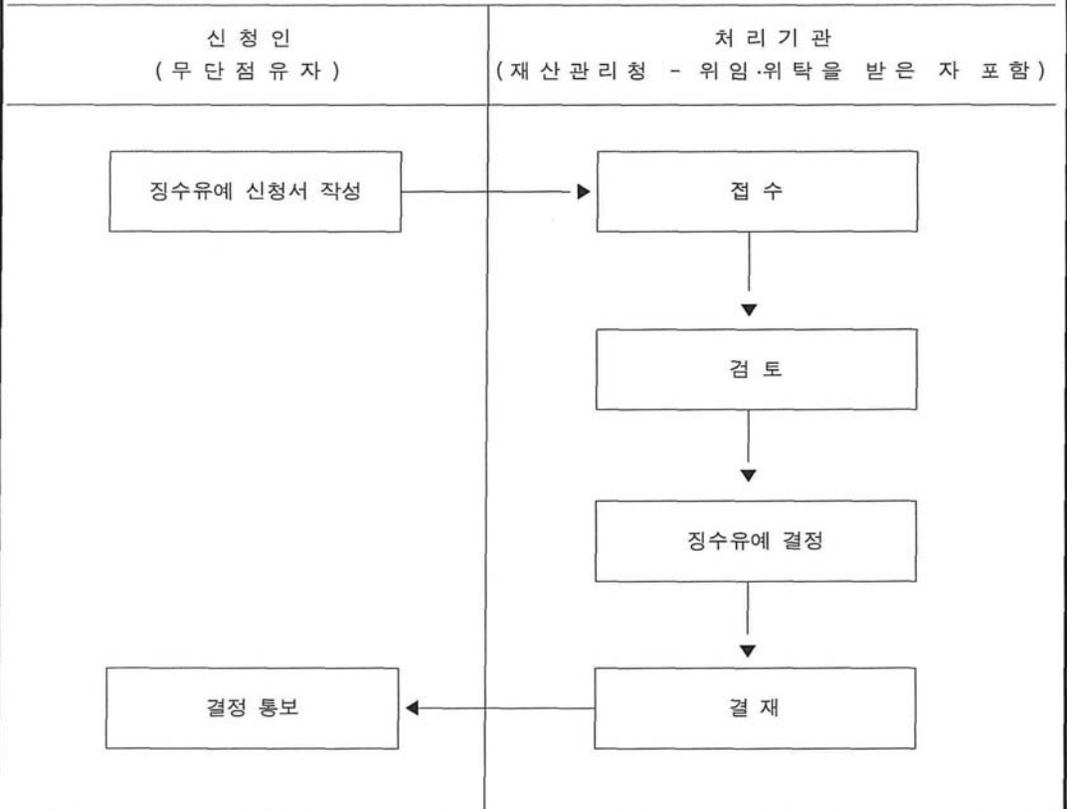
**유의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명칭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재산관리공무원의 명칭	지정관직
본청	총괄직	재산관리관	행정관리국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재무과장(행정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 담당관
교육청	주임직	재산관리관	교육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교육청의 각 과장
관서(제1·2관을 포함)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관서의 장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 2. (생략)
3. 교육청 및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과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
4. (생략)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명칭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재산관리공무원의 명칭	지정관직
본청	총괄직	재산관리관	행정관리국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재무과장(행정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 담당관
교육지원청	주임직	재산관리관	교육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u>교육지원청</u> 의 각 과장
관서(제1·2관을 포함)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관서의 장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교육지원청 -----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원청 -----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분임재산 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u>필요한 때에는</u> 감수인을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 ----- ----- <u>필요할 때</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u>발생한 때에는</u>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재해보고) ① ----- ----- ----- <u>발생하였을 때</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 ② (생략)</p> <p>③ 본청 또는 <u>교육청</u>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공사를 <u>완공한 때에는</u>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등 재산관</p>	<p>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② ----- <u>교육지원청</u> ----- ----- ----- <u>완공하였을 때</u> ----- ----- -----</p>

현행	개정안
<p>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p>	<p>-----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 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u>발생한 때에는</u>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 ----- <u>발생하였을 때</u>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 ⑤ (생략)</p>	<p>제3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 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u>필요한 때에는</u>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p>	<p>⑥ ----- ----- ----- <u>필요할 때</u> ----- ----- -----.</p>
<p>⑦ ~ ⑨ (생략)</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제3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p>	<p>제3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① -----</p>

현 행	개 정 안
<p>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u>교육청</u> 분과 제2관서의 분을 집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 ----- ----- ----- <u>교육지원청</u>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u></p>	<p><u>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u></li> <li>2. <u>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7호서식</u></li> <li>3. <u>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37호의2서식</u></li> <li>4. <u>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u></li> </ol>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별지 제37호의2서식] <span style="float: right;">(앞면)</span></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b>변 상 금 정 수 유 예 신 청 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0%;">신청인</td> <td style="width: 30%;">①성 명</td> <td style="width: 30%;">②생년월일</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③주 소</td> <td>④전화번호</td> <td></td> </tr> </table> <p>⑤신청사유</p> <p>⑥신청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재산의 표시</th> <th rowspan="2">부과면적 (㎡)</th> <th rowspan="2">변상금 (원)</th> <th rowspan="2">유예신청금액 (원)</th> <th rowspan="2">정수유예기간</th> </tr> <tr> <th>소재지</th> <th>지목</th> <th>지적 (㎡)</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개월</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개월</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개월</td> </tr> </tbody> </table> <p>「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정수유예를 신청합니다.</p> <p>붙임 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교육감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한용종)]</p> </div> <p style="text-align: right;">(뒷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유의 사항</b></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변상금의 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li>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li> <li>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li> </o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처리 절차</b></p> <p>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신청인 (무단점유자)</th> <th style="width: 50%;">처리기관 (재산관리청 - 위원·위탁을 받은 자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수유예 신청서 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 수</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검 토</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수유예 결정</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결정 통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 제</td> </tr> </tbody> </table> </div>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부과면적 (㎡)	변상금 (원)	유예신청금액 (원)	정수유예기간	소재지	지목	지적 (㎡)							( )개월							( )개월							( )개월	신청인 (무단점유자)	처리기관 (재산관리청 - 위원·위탁을 받은 자 포함)	정수유예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정수유예 결정		↓	결정 통보	결 제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부과면적 (㎡)	변상금 (원)	유예신청금액 (원)	정수유예기간																																																	
소재지	지목	지적 (㎡)																																																					
						( )개월																																																	
						( )개월																																																	
						( )개월																																																	
신청인 (무단점유자)	처리기관 (재산관리청 - 위원·위탁을 받은 자 포함)																																																						
정수유예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정수유예 결정																																																						
	↓																																																						
결정 통보	결 제																																																						

